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9조 [천장의 높이]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9조(천장의 높이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**2미터 이내**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 · 보수용 ·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조문 대조 2026. 10. 29.